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8-14호

「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, 전문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8년 1월 12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위반(위임범위 이탈) 사항을 보완 ·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제16조제2항 삭제
 -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.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⇒ 삭제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1. 12. ~ 1. 17.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jw1028@korea.kr

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
3) 팩스 : 061-749-477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지원센터의 지도·점검)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